

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5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6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수익매각 규정 추가 및 개별법령과 어긋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(안 제28조, 제32조, 제38조)
 - 1)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⇒ 삭제
 - 2)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(대부)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⇒ 추가
 - 3)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, 대부 또는 사회적기업·사회적협동조합·자활기업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 사용(대부)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⇒ 추가

4)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·연립주택·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거나, 전원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,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⇒ 삭제

○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수의매각 규정 추가(안 제40조)

- 1)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·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)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⇒ 추가
- 2)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⇒ 추가
- 3)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⇒ 추가

○ 개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(안 제30조)

- 1) 주요정비내용 : 광물 ⇒ 토석, 원석 거래시가 ⇒ 감정평가금액, 감정 평가기관 ⇒ 감정평가사로 수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있는 수의매각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요율 1,0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,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.
- 또한, 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,
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 주민 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,
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
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광물채취료 등)”을 “(토석채취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광석·토석 등의 채취”를 “토석채취”로, “광석·토석 등의 광물채취료”를 “토석채취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채광물가격”을 “토석가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정평가기관”을 “감정평가업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채광물”을 “토석”으로, “광물채취료”를 “토석채취료”로 한다.

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 제17조제6항, 영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.

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, 제22호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, 제20호,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40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로써 읍·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)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
7.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8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3. ~ 6. (생 략)</p> <p>⑤ (생 략)</p> <p>제30조(<u>광물채취료 등</u>)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<u>광석·토석 등의 채취</u>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<u>광석·토석 등의 광물채취료</u>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</p>	<p>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<u>토석채취료 등</u>) ① ----- ----- <u>토석채취</u>----- ----- <u>토석</u> <u>채취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

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,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 조서,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, 용도별 생산비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삭 제

② (생략)

다만,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----- 토석가격-----

--.

④ -----
----- 감정평가업자

-.

⑤ -----
토석-----

----- 토석채취료-----.
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

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~ ④ (생략)

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40조(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③ 영 제17조제6항, 영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하여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

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, 제22호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, 제20호,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40조(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-----

-----.

1. 삭 제

2. ~ 5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로써 읍·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)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

7.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
8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